



중국, “건강보험관리방법” 수정안 발표와 영향

이소양 연구원

2019년 11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(CBIRC)는 건강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적용된 “건강보험관리방법”의 수정안을 발표함. 이번 “건강보험관리방법” 수정안은 건강보험 공급 확대,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. 향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증가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한 건강보험이 보편화될 수 있음

영향

■ 2019년 11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(CBIRC)는 건강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적용된 “건강보험관리방법”의 수정안을 발표함

- 현행 “건강보험관리방법”은 2006년 6월에 발표됐으며, 2014년 7월 이후 일련의 건강보험 관련 새로운 정책 공개로 “건강보험관리방법”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함
 - 2017년 11월 CBIRC는 “건강보험관리방법”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했으며, 2년 동안 보험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“건강보험관리방법” 수정안의 최종 버전을 결정함
- 2014년 7월 중국 정부는 “상업 건강보험 발전에 관한 의견”을 발표해 상업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으며, 그 이후부터 일련의 건강보험 활성화 방안들이 잇따라 공개됨
 - 2016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“의약위생제도 개혁 계획에 관한 통지”를 발표해 보험회사의 의료, 요양 및 건강진단 관련 기관의 설립을 장려하기로 함
 - 2017년 4월 CBIRC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연간 최대 2,400위안 한도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“건강보험 세제혜택 방안”을 도입함
 - 2017년 5월 중국 국무원은 “민간자본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의견”을 발표해 상품 개발, 보험금 지급, 부가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협력을 장려하기로 함

■ 이번 “건강보험관리방법” 수정안은 건강보험 공급 확대,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

- 우선 건강보험 공급 확대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의 유형 및 경영주체 확대, 장기의료보험의 요율 조정 허용,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건강보험 개발 장려, 의료보험 신상품 개발 장려,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 허용이 있음
- 또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의 유예기간 상향조정, 면책기간 제시, 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기간 명시, 언더라이팅 시 유전자 관련 정보 수집 금지, 건강보험의 끼워 팔기 금지가 있음
-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운영 관련 내용의 경우 신기술의 이용 허용, 건강보험사업부서 설립,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감독기준 단일화가 있음

〈표 1〉 “건강보험관리방법” 수정안의 주요 내용

구분	세부 내용
건강보험 공급 확대 관련 내용	• 건강보험의 유형: 기존의 의료보험, 질병보험, 소득보장보험, 간병보험에서 의료상해보험까지 확대 • 건강보험의 경영 주체: 기존의 생명보험회사, 건강보험 전문보험회사, 손해보험회사에서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까지 확대 • 장기의료보험의 요율 조정 허용: 질병 데이터의 변화, 의학기술 발전 및 의료비용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가능 •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건강보험 개발 장려: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을 보험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,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이 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의 12%에서 20%로 상향조정됨;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이 20%를 초과한 경우 단독 계약으로 수취해야 함;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위험의 평가 및 개입, 질병예방, 건강검진, 건강상담, 건강관리, 만성질병관리, 헬스케어 포함 • 의료보험 신상품 개발 장려: 신약, 새로운 의료설비, 새로운 진료방법을 보장한 새로운 의료보험 개발을 장려 • 보험회사의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: 보험고객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전제하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를 허용
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내용	• 건강보험의 유예기간 상향조정: 기존의 10일에서 15일까지 상향조정 • 건강보험의 면책기간: 면책기간의 상한을 180일로 제시 • 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기간 명시: 보험기간의 하한을 5년으로 명시 • 언더라이팅 시 유전자 관련 정보 수집 금지: 유전병 외에 유전자 정보, 유전자 검사 자료를 언더라이팅 자료로 사용이 불가 • 건강보험의 끼워 팔기 금지: 건강보험을 기타 상품과 끼워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건강보험 판매 행위를 금지
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운영 관련 내용	• 신기술의 이용 허용: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 심사, 보험 지급에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, 위험관리에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음 • 건강보험사업부서 설립: 건강보험 전문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경영 시 건강보험사업부서 설립이 필요 •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감독기준 단일화: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업무에 적용된 감독기준, 경영원칙 및 책임준비금 평가기준을 통일

■ 향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증가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한 건강보험이 보편화될 수 있음

- 중국 건강보험시장은 2014년부터 급성장하고 있지만 장기의료보험의 요율 조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중국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대부분 건강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질병보험에 집중

되고 있음

- 중국 건강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2014년 1,587억 위안에서 매년 50.4%씩 증가해 2018년 5,448억 위안을 기록함
- 2017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중에 질병보험(56.8%)은 1위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의료보험(32.3%), 간병보험(10.8%), 그리고 소득보장보험(0.1%) 순임
- 중국보험협회는 대다수 중국 보험회사가 건강보험 가입자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조사했으며, 향후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한 건강보험이 보편화될 수 있다고 전망함¹⁾
 - 중국보험협회에 따르면 85.7%의 보험회사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대답함
- 한편, 2018년 기준 상위 10개 보험회사는 중국 건강보험시장에서 80%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이들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것으로 보임
 - 예를 들어, 건강보험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평안보험회사는 “굿닥터”라는 온라인의료플랫폼을 개발해 보험가입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[kiri](#)

1) 중국보험협회(2018. 6), "2018년 중국 건강보험 발전지수 보고서"